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 내 공정채용 문화 확립, 청년 채용 촉진, 청년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속 유도 사무를 유기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의 공정채용기반과 명칭을 청년채용기반과로 변경하고, 통합고용정책국 소속 부서 간 기능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 0. 공포·시행) 개정으로 2026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울산동부고용센터 위치를 울산광역시 동구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 중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정원 40명(7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40명)하며, 근로감독관 정원 210명(6급 210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7급 210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6조의2제4항 중 “공정채용기반과”를 “청년채용기반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5 및 제1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총괄

13의5.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의6.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

제6조의2제1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1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채용기반과장”을 “청년채용기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제14조제6항제9호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9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받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강원지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단서 중 “2명(6급 2명)”을 “1명(6급 1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울산지청 밑에 울산동부지청 울산동부고용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동부지청	울산동부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별표 6 중 총계 “655”를 “656”으로, 일반직 계 “648”을 “649”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0”을 “41”로 한다.

별표 10의2를 삭제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 “1,187”을 “1,167”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39”를 “27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98”을 “458”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98”을 “148”로, 행정주사보 “1,382”를 “1,402”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642”를 “602”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20”을 “86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83”을 “233”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을 각각 “9”로,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

사 “3”을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4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8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210명(행정주사보 20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140명,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50명)은 2028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10명(행정주사 20명,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140명,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50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③ (생략)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고용정책국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애인고용과·사회적기업과·청년고용기획과·청년취업지원과 및 <u>공정채용기반과</u> 를 둔다.	④ ----- ----- ----- ----- <u>청년채용기반과</u>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운영</u>	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총괄
9의2. <u>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u>	<삭 제>
10. ~ 13의4. (생략)	10. ~ 1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5. <u>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u> 에 관한 사항
<신 설>	13의6. <u>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7. ~ 10. (생략) <u>11.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u>에 관한 사항 <u>12.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u> ⑫ <u>공정채용기반과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8.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총괄</u>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⑤ (생략)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소관 회계·기금의 수입 및 징수, 채납처분,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⑪ ----- -----. 1. ~ 5. (현행과 같음) <u>6.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u> 7.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⑫ <u>청년채용기반과장</u>----- -----. 1. ~ 7. (현행과 같음) <u>8.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운영</u>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 받은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u><신설></u> 10. ~ 21. (생략) ⑦ ~ ⑰ (생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u>2명(6급 2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청 ----- ----- ----- ----- 9의2. 9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받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강원지청으로 한다.) 10. ~ 21. (현행과 같음) ⑦ ~ ⑰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u>1명(6급 1명)</u> ----- -----.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u>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u> 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
고용노동부령 제46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6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13의 정원 <u>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3명)</u> 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5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4명)----- -----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5</u>	<u>656</u>	+1
·	·	·	
·	·	·	
일반직 계	<u>648</u>	<u>649</u>	+1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 사보·보건주사보·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0</u>	<u>41</u>	+1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u>1,187</u>	<u>1,167</u>	-20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239</u>	<u>279</u>	+40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 또는 전산주사	<u>598</u>	<u>458</u>	-140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u>198</u>	<u>148</u>	-50
·	·	·	
행정주사보	<u>1,382</u>	<u>1,402</u>	+20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642</u>	<u>602</u>	-40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720</u>	<u>860</u>	+140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83</u>	<u>233</u>	+50
·	·	·	
·	·	·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u>	<u>9</u>	-1
일반직 계	<u>10</u>	<u>9</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u>3</u>	<u>2</u>	-1
·	·	·	
·	·	·	